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 현황과 개정안 주요내용

이상우 수석연구원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의 수급권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동 법률안은 그동안 건설일용직 특성을 간과하여 부담금 납입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수급자격을 부여한 퇴직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납입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을 확대함. 동 공제가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장치로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함

■ 고용노동부¹⁾는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의 수급권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는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 근무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제 도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수급자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2016년 동 공제의 가입 근로자(피공제자) 수는 약 485만 명이고 이중에서 현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약 150만 명임

●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을 확보하여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86,457명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적립일수와 평균 지급금액이 각각 77.9일, 255만 원에 불과함²⁾

■ 동 공제는 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 후 부담금을 납입하고 수급자격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각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임

● 의무 가입대상은 일정규모 이상³⁾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1) 고용노동부(2017. 11.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 건설근로자공제회(2017. 9), 『2016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 연보』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임

- 사업주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공제부금(1일 5,000원)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가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적합한 퇴직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함
- 지급요건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 이상의 건설근로자임

■ 현재 60세 이상 가입자 중에서 퇴직공제 수급요건인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가 <표 1>과 같이 88.3%에 이르는 등 고령 가입자의 대부분이 퇴직공제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6년 전체 가입 근로자 중에서 12개월 이상을 납입자 수가 약 79만 명(16.2%)이고, 특히 60세 이상 가입 근로자 약 115만 명 중에서 12개월 이상 납입자 수가 약 13만 명(11.7%)에 불과함
- 따라서 퇴직공제 수급기준 연령인 60세 이상 가입자의 대부분이 납입기간 12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동 제도가 건설업과 일용·임시직 근로자 특성을 간과하여 동일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의 수급자격을 적용하였기 때문임

<표 1> 공제부금 적립기간별 가입 건설근로자 현황(2016. 12)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합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합계	구성비	12개월 미만	구성비	12개월 이상	구성비
60세 미만	인원	3,692,885	(100)	3,040,878	(82.3)	652,007	(17.7)
	금액	2,238,843	(100)	584,339	(26.1)	1,654,504	(73.9)
60세 이상	인원	1,152,582	(100)	1,017,915	(88.3)	134,667	(11.7)
	금액	495,736	(100)	193,054	(38.9)	302,682	(61.1)
계	인원	4,845,467	(100)	4,058,793	(83.8)	786,674	(16.3)
	금액	2,734,579	(100)	777,393	(28.4)	1,957,186	(71.6)

자료: 서형수 의원 등(2017.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작성

■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퇴직공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안)에서 수급요건을 확대함

- 현행 법률은 퇴직공제금을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

3) 당연가입대상 공사 범위는 공공공사 금액 3억 원(민간공사는 100억 원) 이상, 200호(실)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 등임

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명시함

- 그러나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함

〈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자료: 홍영표 의원 등(2017.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 동 개정안은 그동안 법률에서 제외되었던 납입 1년 미만의 고령 건설일용직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kiri**